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마크애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DRM(Documet SAFER)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120,000원, vat별도, 유지보수 기간 (27.01.01~27.12.31))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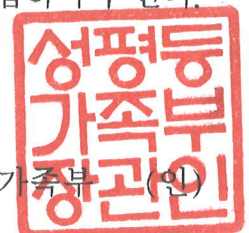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8월 31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마크애니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e 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투씨에스지
- 기술지원제품 : DB 암호화 솔루션 (CubeOne) / 4Core Base Package 1EA / Initial Core lic. For Ent. PRD, P/I 12EA
- 유지보수 기간: 2027-01-01 ~2027-12-31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DB 암호화 솔루션 CubeOne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 3 조(협약금액) 제 2 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사백칠십육만일천 원(W4,761,00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제 4 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23일

발주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투씨에스지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쓰리에스소프트
- 기술지원제품(물품명): OLAP, Micro Strategy 10.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LAP, Micro Strategy 10.1)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200,000원, VAT별도, 유지보수 기간 2027.01.01~20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2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쓰리에스소프트 (인)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와이즈넷
- 기술지원제품 :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검색엔진)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000,000원,vat별도,유지보수 기간 27.01.01~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8월 11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와이즈넷 (인)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한컴이노스트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리포팅툴 (CLIPreport V4.0 2식))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3,828,000원 / vat포함)으로 한다.

유지보수 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3일

발주기관 성평등가족부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한컴이노스트림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1. 사업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2.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3. 기술지원제품 : 원격지원서비스, Wizhelper 2유저
4.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아란타(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격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1,485,000원(vat포함), 유지보수 기간은 27.01.01~27.12.31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발주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아란타(주)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라온시큐어(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Key# nxBiz * 2식, TouchEn nxKey * 2식)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316,000원, VAT별도, 유지보수 기간 27.01.01~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8월 11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라온시큐어(주) (인)